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인정기준  
이대로 시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치고 어깨나 허리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산재 신청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사업주가 산재치료를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산재가 인정되도 한 두달만 치료하라는 겁니다.

첫째,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들은 미국의 1/20, 영국의 1/10에 불과한데, 인정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직업병 인정을 안해주겠습니다.

둘째, 치료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 병이 낫지 않아도 "치료를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1

## 영세 사업장 노동자 김씨의 이야기

34세 김씨는 허리 디스크 환자이다.

3-4년 전부터 시작된 요통이 점점 심해져 1년 전 허리 디스크로 진단 받았다. 직장 끝나고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허리에 좋다는 운동도 모두 해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매일 무거운 중량을 수 백 번씩 들기 때문에 요통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용기를 내어 산재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꾸미고 사장에게 직인을 찍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사장 왈

"산재처리? 이봐 김00씨 회사에서 크게 사고 당한적도 없고, 그전부터 계속 허리 치료했다는 걸 동료들이 다 알아 개인질병을 왜 회사에 책임지라는 거야?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산재신청 하려면 사표를 써!"

협박을 받았다. 그렇지만 너무 아파서 결국 산재 신청을 하고 요양을 시작하였다. 산재신청한지 4개월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통지서가 왔다. 판정결과는 불승인이었다.

"귀하의 허리 디스크는 퇴행성질환으로 기존의 질환입니다. 작업내용은 11개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며, 귀하는 디스크로 과거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해왔던 헬스와 수영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디스크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의해 나타난 기존질환인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업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이제 노동자는 운동하면 큰일난다. 허리근육 강화 운동하면 허리병이 생긴 원인으로 몰아붙인다. 노동부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해라.. 피곤하면 잠이나 자고!



## 2

### 조선소 노동자 이씨의 이야기

51세 이씨는 조선소 용접공으로 30년간 일하다가 어깨 힘줄이 손상되어 산재로 3개월 쯤 치료받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다.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인 노력도 열심히 하였다. 처음에는 어깨를 앞으로도 옆으로도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깨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고, 옆으로도 90도 이상 올라가게 되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주었던 통증도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어 기분 좋게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치료 3개월이 될 즈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귀하의 질환은 3개월 정도의 치료가 적정 치료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치료를 종결합니다.”

병원의 주치의는 적어도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이게 무슨 소린지. 근로복지공단에 항의를 했지만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아직 팔도 제대로 못 드는데 어떻게 힘든 용접작업을

할 수 있을까? 참고 일한다해도 일은 전만 같지 않을 것이 뻔하고 관리자와 동료에게 타박 받을 생각을 하면, 잠도 오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 둘까? 그만두면 애들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살아갈 자신이 없다. 더러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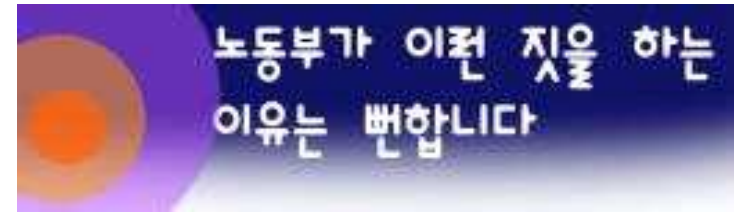
## 3

### 산재치료후 복귀한 사무직 노동자 박씨의 이야기

32세 박씨는 사무직 노동자로 마우스를 많이 쓰다가, 어깨.손목 통증이 심해져 산재치료 후 복귀한 노동자이다.

산재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증상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쉬고 있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들까봐 현장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막상 복귀하고 보니 작업조건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작업량은 더 증가된 상태였다. 복귀한지 1주일 만에 증상이 다시 심해졌다. 복귀한지 3개월만에 다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결과는 재요양 불승인이었다. “종결시보다 현격히 악화된 증거를 확인 할 수 없다” 는 이유였다. 지금도 아파서 일을 못하겠는데, 더 참아서 아예 팔을 못쓰게 되어야 산재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경총은 노동부를 시켜서 우리가 싸워서 따낸 권리들을 종이쪼가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총이 복치고, 노동부가 장구치는 것입니다. 경총이 올해 들어 한 짓거리가 이렇습니다.

- ① 10월4일 보도자료 : 산재보험 민영화를 공개적으로 주장
- ②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 프로젝트 진행(12월 마무리 예정으로 산재보험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연구 중)
- ③ ‘산재나이롱 환자 사례집’ 작성(산재노동자 도덕적 해이를 제기할 준비)
- ④ 강제치료종결을 위한 ‘적정요양기간 설정’ 연구용역 마침

노동부가 이대로 처리지침을 통과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이 마음대로 근골격계 환자들을 주무르면, 그 다음에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시도할 겁니다. 동지들의 힘 모아 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